

2017년 정규직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차별·편견 없는 직무능력(NCS)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계		30명		
기술분야 (채용형 인턴)	공개경쟁	15명	○ 승강기 검사기법 연수 및 행정업무 보조	서울·인천·경기
	사회형평적 인력 제한경쟁	15명		

- ① 채용 예정분야 NCS기반 직무소개 : 「별첨 1」참조
- ② 채용형 인턴 : 일정기간(6개월) 인턴으로 근무 후 자격 취득여부와 평가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한 우수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최종합격한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③ 최종합격자에 따라 채용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④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⑤ 지역사무소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 「공단소개>찾아오시는길>지역사무소」참조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예정일(2017.12.29)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만60세 이상자는 제외)
기술분야 (채용형 인턴)	공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기사에 응시 가능한 사람 ※ Q-Net(www.q-net.or.kr) 응시자격자가진단 참조
	사회형평적 인력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승강기기사에 응시 가능한 사람 ※ Q-Net(www.q-net.or.kr) 응시자격자가진단 참조

※ 채용 결격사유 : 「별첨 2」참조

3. 채용형 인턴 채용조건

구 분	채 용 조 건
근무기간/시간	○ '17.12.29 ~ '18.06.28(6개월) /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일)
보 수 수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만원 상당(세전 월 총액, 4대보험·중식비 포함) * 정규직 임용 시는 내규에 따라 정규직 보수책정 적용
정규직 전환기준	○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관련 자격취득 여부 및 교육성적,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75%이상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의거한 자격사항에 따라 6급 또는 7급으로 임용
기 타 사 항	○ 정규직 미전환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소멸

4. 채용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고 및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기간 : 2017.11.24.(금) ~ 12.10.(일),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7.11.30.(목) ~ 12.10.(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s://koelsa.career.co.kr > ※ 접수마감 시간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에 대해서는 미제출로 간주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발표 : 2017. 12. 12(화), 17:00(예정) 						
필기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일시 : 2017. 12. 16(토)(예정) ○ 장소 : 미정(서울 소재 고사장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시간 및 장소 안내 예정 ○ 시험과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과 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 분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채용형 인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기사 출제 과목 - 승강기 개론 (20%) - 승강기 설계 (20%) - 일반기계공학 (30%) - 전기제어공학 (30%)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발표 : 2017. 12. 19(화), 17:00 (예정) 	구 분		과 목	기술 분야	일반직 (채용형 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기사 출제 과목 - 승강기 개론 (20%) - 승강기 설계 (20%) - 일반기계공학 (30%) - 전기제어공학 (30%)
구 분		과 목					
기술 분야	일반직 (채용형 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기사 출제 과목 - 승강기 개론 (20%) - 승강기 설계 (20%) - 일반기계공학 (30%) - 전기제어공학 (30%)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 2017.12.22.(금) (예정) ※ 장소 및 시간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12.27.(수) ○ 임용일 : 2017. 12. 29(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리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확인 요망
- ※ 각 전형별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함
- ※ 채용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5.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①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서류전형 합격자 (인터넷 접수)	① 필기전형 본인확인용 서류(별도안내)
최종 합격자 (우편 제출)	<p><공통 서류></p> <p>① 입사서류 각 1부(별도안내)</p> <p>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p> <p><해당자 제출서류></p> <p>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p> <p>② 국가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p> <p>③ 장애인 증명서 1부</p> <p>④ 자격증 사본 1부</p> <p>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p>

※ 우편 주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재경영부

6. 가산점(서류 및 필기전형)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만 적용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최대 5점
- 국가보훈대상자 : 5점 또는 10점
- 경남 이전지역인재 : 5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거

- 대상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경남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부산, 울산, 대구, 경북지역 소재 학교는 비대상

예) 경남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남 외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 : 경남지역 지역인재 X

경남 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남소재 대학교 졸업(예정) : 경남지역 지역인재 O

경남 외 소재 대학교 졸업 후 경남소재 대학원 졸업(예정) : 경남지역 지역인재 X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발견 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 후에라도 소급하여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지원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임용 후에라도 소급하여 입사가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3월내에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 내¹⁾에 반환 청구 시 반환을 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이때, 채용서류의 반환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재경영부(☎055-751-0774, 0777)로 문의 바랍니다.

1) 반환 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첨 1」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승강기 법정검사】

채용분야	기술	분류 체계	대분류	15. 기계
			중분류	05. 기계장치설치
			소분류	01. 기계장비설치·정비
			세분류	승강기 법정검사 (공단 자체개발)
공단 주요사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채무 (능력단위)	○ 승강기 법정검사(완성·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 실시			
직무수행내용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검사 기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접수에 따른 일정 안내, 검사준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별 주요 부품의 기능 및 안전성 테스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			
일반요건	연령	공고문 참조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승강기, 기계, 전기·전자학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필요지식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준의 이해, 검사유형(완성, 정기, 수시, 정밀안전)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승강기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등)에 대한 기계구조 이해, 승강기 설치 부품별 특성 및 성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 기계) 해석, 승강기 조작 매뉴얼, 승강기 이용자 준수 사항, 검사 측정 장비 종류 및 사용 매뉴얼 등			
필요기술	○ (승강기 법정검사) 검사기준 해석 및 검사결과 판정 능력, 검사기록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기술문서 작성 능력, 검사정보시스템(전산) 사용 능력, 기계실·승강로·승강장·피트 등 구조파악 및 검사능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기계) 해석 능력, 검사 측정 장비 사용 능력, 승강기 관리주체에 검사결과 설명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무수행태도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검사기준 및 매뉴얼을 준수하는 태도, 공정한 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정확한 설명 및 업무처리 등), 안전수칙 준수로 검사수행 시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등) 주의			
필요자격	○ (주요자격)승강기 기사,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 기능사 ○ (보조자격)기계, 전기, 전자, 안전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NCS·학습모듈 검색			

「별첨 2」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